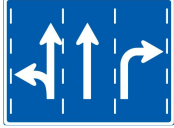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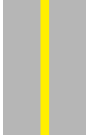


일본의 도로표지, 표시를 지켜주세요 (1)

	사람도 차량도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도 좌회전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이지만,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차량에는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 기준은 10km/h 이하이며,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륜차 이외의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 등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표시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이며, 보행자나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등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도로이며, 그 외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하여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이며, 차량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도로표지, 표시를 지켜주세요 (2)

	일방통행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진입 금지.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에 따라 지정된 주행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유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된 차량 전용 차선입니다.
	앞을 달리는 차량을 추월할 때 황선의 오른쪽으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앞에 건물목이 있습니다.
	주차도 일시 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근처에 학교 등이 있어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규칙을 지켜 일본에서 안전운전 (1)

(1) 좌측 통행



★ 일본은 좌측 통행입니다. 지금까지 우측 통행 국가에서 운전하셨던 분들은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우측으로 주행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도로 오른쪽을 달리면 교통 위반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어 위험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경찰(전화 110)에 신고하세요. 부상자가 있는 경우, 부상자를 구호하고 구급차(전화 119)를 요청한 후 경찰(전화 110)에 신고하세요.

★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한 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 금지

★ 술을 마셨을 때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중한 벌칙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등의 엄격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운전을 요구하거나 의뢰하여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숙취 상태에서도 운전하면 안 됩니다!

(4)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 건널목은 경보기가 울리지 않더라도 일시정지를 하여 열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건너야 합니다.



(5) 보행자 우선

★ 일본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를 하여 길을 양보합니다.



(6) 교차로에서는 특히 주의하세요

★ 교차로에서는 ①보행자 우선, ②우회전 시 직진 및 좌회전 차량 우선.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7) 휴대폰 사용 금지

★ 차량 운전 중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화면을 응시하는 등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표지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

일본에는 귀하의 모국과는 다른 교통규칙과 표지판이 있습니다.



★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하세요.

규칙을 지켜 일본에서 안전운전 (2)

(9) 자신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분에 대해 파악하세요

★ 모국의 면허와 운전 가능한 차량 범주는 다릅니다.
★ 운전 가능한 차량을 확인한 후 운전하세요.

보통	정원 10명 이하 차량 총중량 3,500kg 미만 최대 적재량 2,000kg 미만	
준중형	정원 10명 이하 차량 총중량 7,500kg 미만 최대 적재량 4,500kg 미만	※적재량이나 정원은 차량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운전하세요.
중형	정원 29명 이하 차량 총중량 11,000kg 미만 최대 적재량 6,500kg 미만	
대형	정원 30명 이상 차량 총중량 11,000kg 이상 최대 적재량 6,500kg 이상	
대형자동차 이륜차	정원 2명 이하 배기량 400cc 또는 출력 20kW 초과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후 1년간(고속도로는 3년)은 동승이 불가능합니다.
보통자동차 이륜차	정원 2명 이하 배기량 400cc 또는 출력 20kW 이하	
건인	차량 총중량 750kg 초과 트레일러	

★ 버스 및 택시 운전

-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려면(유상 승객 운송) 별도로 일본 '2종 면허' (二種免許)가 필요합니다.
- 운전할 차량 종류에 맞는 일본 '2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 또한 영업 목적으로 사람을 운송할 때는 일본 2종 면허와는 별도로 운수국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10) 실을 수 있는 화물의 크기, 적재 방법에 대해 확인하세요

★허가 필요★

전후	
자동차 차체 전후에서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돌출되는 경우	
전	후
차체 길이의 0.1배까지	차체 길이의 0.1배까지
좌우	
자동차 차체 좌우에서 자동차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돌출되는 경우	
좌	우
차체 폭의 0.1배까지	차체 폭의 0.1배까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2를 더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폭	
자동차 폭에 그 폭의 10분의 2를 더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	
높이	
지면에서 적재물 최상부까지 높이가 3.8미터(경자동차 및 삼륜자동차는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지면에서 적재물 상부까지 3.8m

차체 길이의 1.2배까지

차체 폭의 1.2배까지

★ 트럭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그 크기와 적재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화물이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적재물의 중량, 크기 또는 적재 방법의 제한을 초과하게 되면 제한을 초과하여 적재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갱신하세요.

교통위반 및 교통사고에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